

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(전호야구장 외 7건)

의안 번호	제352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0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
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
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간 : 2025. 1월 ~ 2026. 12월(2년)
나. 수탁자 :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·법인 등
다. 위탁방법 : 민간 위탁
라. 위탁내용 :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마. 위탁사무 :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나. 「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」 제20조(위탁관리)
다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해당 없음

5.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대상

번호	시설명	내 용	추진방법	(현)위탁관리자
	계	8개 사업		
1	전호야구장	전호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
2	전호배드민턴장	전호배드민턴장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고촌배드민턴클럽
3	파크코스 테니스장	파크코스테니스장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김포시테니스협회
4	금릉정 (국공장)	금릉정(국공장)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금릉정
5	태산정 (국공장)	태산정(국공장)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태산정
6	대호정 (국공장)	대호정(국공장)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대호정
7	신곡체육시설 (족구장)	신곡체육시설(족구장)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김포시 족구협회
8	양곡테니스장	양곡테니스장 운영 및 유지관리	운영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김포시테니스협회

소관 실·과·소		체육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체육과장 이 상 익
	팀 장 직위·성명	체육시설팀장 민 경 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서기 김 기 천(☎2585)

참고1 관계법령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

제20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·법인이나 개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, 2023.8.9.>

② 삭제 <2020.03.25.>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., 2022.9.21.>

④ 삭제 <2020.03.25.>

□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감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③삭제 <2020.02.14.>

④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

제14조 (협약체결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위탁기관,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, 수탁기관의 의무·준수사항,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③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④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